

는溯及하여 그效力이發生한다

第二十條 (住所나居所가 없는者の代理人) ①國內에住所나居所를가지지 아니한者는閣令의定하는境遇를除外하고는國內에住所나居所를가지친代理人을通하지 아니하고서特許에關한出願請求 및 其他의節次나特許權 또는 特許에關한主張을하지 못한다

②前項의代理人은出願이나請求 및 其他의主張을한權限이 있는外에本法 또는 本法에依據하여發하는命令에規定한節次其他民事訴訟과告訴에關하여本人을代理한다

③特許權者 또는 特許權에關하여登錄을한者의代理人으로서第一項에規定한節次 또는 主張을한代理人의選任,變更을하지거나 또는 그代理權의變更,消滅을登錄을하지 아니하면第三者에對抗하지 못한다

④民事訴訟法第四章의規定은前項의代理人에對하여 이를準用한다

第二十一條 (其他代理人의申告)

特許에關한出願, 請求其他의節次를발한者의代理人으로서前條第三項의規定에依한代理人이 아닌者의選任,變更 또는 代理權의變更,消滅은特許局에申告하지 아니하면特許局에對抗하지 못한다

第二十二條 (委任代理權의存續)

特許에關한出願, 請求 및 其他의節次

를발한者의委任에依한代理人의代理權은本人의死亡, 能力의喪失, 法人의合併에依한消滅, 信託任務의終了 또는 法定代理人의死亡이나能力의喪失 또는 代理權의變更, 消滅로因하여消滅하지 아니한다

第二十三條 (數人의代理人) 特許에關한代理人이數人이 있을境遇에는特許局에對하여各自가本人을代理한다

第二十四條 (代理人의改任) ①特許局長은特許에關한代理人이不適當하다고認定할 때에는 그改任을命할수 있다

②特許局長 또는 審判長은當事者, 參加人, 特許異議申請人 또는 그代理人의節次 또는 口頭審理에서陳述한能力이 없다고認定할 때에는 辨理士로 하여금代理하게 할것을命할수 있다

③前二項의規定에依한命令이 있는後에第二項의代理人 또는 前項의當事者, 參加人, 特許異議申請人과 그代理人이特許局에對하여行爲는이를無效로 할수 있다

第二十五條 (共有者의代表) ①數人이

特許에關하여共同으로出願, 請求 및 其他의節次를발한者 또는 特許權의共有者는特許局에對하여各者가代表한다 但特許代表者를選定하여特許局에申告한 때에는 例外로 한다

②第二十一條의規定은前項但書의代表者에 이를準用한다

第二十六條 (財産所在地의裁判籍)

特許權者가國內에住所나居所가 없을 때에는第二十條第二項의代理人의住所나居所에依하고 그代理人도 없을 때에는 特許局所在地를民事訴訟法第九條의規定에依한財産所在地로 본다

第二十七條 (法定期間의延長) 特許局長은外國 또는 遠隔하고交通不便한地方에 있는者를爲하여請求 또는 職權으로써 特許局에節次를발아야 할法定期間을延長할수 있다

第二十八條 (期間의懈怠와 特許料의不納) ①出願, 請求 및 其他의節次를발한者가 그後의行爲에對하여指定期間을懈怠하거나登錄을받음에納付하여야 할特許料의納付를하지 아니한 때에는 本法에따라規定이 있는境遇를除外하고는特許局長은그出願, 請求 및 其他의節次를無效로 할수 있다

②前項의規定에依하여出願, 請求 및 其他의節次가無效로된境遇에도 그期間의懈怠가天災, 地變其他不可避한 것으로認定될 때에는 그事由가그친날로부터十四日以內二期間滿了後一年以內에請求에依하여特許局長은그懈怠의結果를免除하게 할수 있다

第二十九條 (期間의懈怠와 追完)

天災, 地變其他不可避한事由로因하여特許에關한出願, 請求 또는 節次를발한者에게歸責할수 없는事由로因하여

第三百十七條, 第三百二十九條第一項 또는 本法에서準用하는民事訴訟法第四百十四條의規定에依한法定期間을遵守할수 없을 때에는 그事由가그친날로부터十四日以內에, 二期間이滿了된後一年以內에限하여懈怠한節次를追完할수 있다 但第七十六條의規定에依한特許異議申請期間은例外로 한다

第三十條 (委任規定) 特許局에提出하는書類 및 其他物件의效力發生의時期에關하여必要한事項은閣令으로定한다

第三十一條 (權利의承繼와 節次의效力) 本法 또는 本法에依據하여發하는命令에依하여特許權者, 特許에關한權利를가지친者가발한節次 또는 特許局 및 第三者가그者에對하여발한節次의效力은그特許權 또는 特許에關한權利의承繼人에 미친다

第三十二條 (權利의移轉이 있는境遇의節次의承繼) 特許局에事件이繫屬中에特許權 또는 特許에關한權利의移轉이 있는 때에는 特許局은承繼人에對하여 그節次를續行하게 할수 있다

第三十三條 (節次의中斷, 中止에關한委任規定) 本法에規定한것外에特許局에繫屬中인節次의中斷, 中止 및

要한事項은閣令으로定한다

第三十四條 (特許에關한書類의閱覽 및

二〇二六—二〇七

當時에 이를 한 것으로 본다. 但 그特許의 出願公告가 있는 날로부터 五年을 經過한後에 出願을 하거나 審決이 確定된 날로부터 三十日을 經過한後에 出願을 한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第十三條 (特許를 받음으로 있는 權利)**

①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는 이를 移轉할 수 있다. 但 擔保에 供하지 못한다.

②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가 共有인 境遇에는 共有者는 다 른 共有者의 同意없이 그 持分을 讓渡하지 못한다.

③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의 承繼는 特許出願前에 있어서 承繼人이 特許를 出願하고, 特許出願後에 있어서 是를 相續其他 一般承繼의 境遇를 除外하고는 出願人의 名義變更 申告를 하지 아니하면 그 效力을 發生하지 아니한다. 但 同日의 出願 또는 申告가 競合하였을 때에 는 關係者의 協議에 依하여 協議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모두 그 效力을 發生하지 아니한다.

**第十四條 (期間의 計算)** 本法 또는 本法에 依據하여 發하는 命令에 依한 期間의 計算은 다음 각 號에 依한다.

- 一、 期間의 初日은 이를 算入하지 아니한다. 但 그 期間이 午前 零時로부터 始作될 때에는 例外로 한다.
- 二、 期間을 定함에 있어서 月 또는 年으로 할 때에는 曆에 따른다.
- 三、 月 또는 年의 처음으로부터 期間을

起算하지 아니하는 때에는는 最後의 月 또는 年에서 그 起算日에 該當한 날의 前日로 期間이 滿了한다. 月 또는 年으로 定한 境遇에 最終의 月에 該當日이 없을 때에는는 그 月의 末日로 期間이 滿了한다.

四、 特許에 關한 出願請求 其他의 節次에 關한 期間의 末日이 公休日에 該當될 때에는는 그 翌日을 그 期間의 末日로 한다.

**第十五條 (被用者의 發明)** ① 被用者, 法人의 任員 또는 公務員의 勤務에 關하여 發明에 對하여는 그 發明이 性質上 使用者, 法人 또는 職務를 執行하게 하는 者의 業務에 屬하고 또 그 發明을 하게 된 行爲가 被用者, 法人의 任員 또는 公務員의 任務에 屬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미지 사용者, 法人 또는 職務를 執行하게 하는 者로 하여금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나 特許權을 承繼하도록 定한 契約 또는 勤務規程의 條項은 이를 無效로 한다.

② 被用者, 法人의 任員 또는 公務員이 그 職務에 關하여 發明한 것이 性質上 使用者, 法人 또는 職務를 執行하게 하는 者의 業務에 屬하고 그 發明을 하게 된 行爲가 被用者, 法人의 任員 또는 公務員의 任務에 屬하는 것에 對하여 被用者, 法人의 任員 또는 公務員이 特許를 받았거나 特許를 받을 權利를 讓受한 者가

許를 받았을 때에는는 使用者, 法人 또는 職務를 執行하게 하는 者는 그 發明에 對하여 實施權을 가진다.

③ 法人의 任員이라 함은 法人의 業務를 執行하는 者를 말하고, 公務員이라 함은 法令에 依하여 公務에 從事하는 者를 말한다.

**第十六條 (被用者에 對한 補償金)**

① 被用者, 法人의 任員 또는 公務員은 前條第二項의 發明에 對하여 特許를 받을 權利 또는 特許權을 미지 定한 契約이나 勤務規程에 依하여 使用者, 法人 또는 職務를 執行하게 하는 者로 하여금 承繼하게 한 境遇에는 相當한 補償金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② 前項의 代價決定에 있어서 는 그 發明에 依하여 使用者가 利益을 考慮하여야 하며, 被用者가 正當한 決定方法을 提示하였을 때에는는 이를 參酌하여야 한다.

③ 使用者, 法人 또는 職務를 執行하게 하는 者가 미지 拂拂한 報酬가 있을 때에는는 法院은 前項의 補償金을 定할 때에 이를 參酌하여야 한다.

**第十七條 (國防上 또는 公益上 必要한 發明)**

① 特許를 出願한 發明이 國防上 또는 公益上 必要한 것일 때에는는 特許를 하지 아니하거나 特許를 받을 權利를 政府에서 收用하거나 制限을 加하여 特許할 수 있다.

二〇二六—二〇六

②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特許를 許與하지 아니하는 境遇 또는 權利를 收用하거나 制限을 加하여 特許한 境遇에는 政府는 相當한 補償金을 支給하여야 한다.

③ 前項의 收用 補償金 支給額과 그 方法 및 秘密特許 審査의 節次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閣令으로 定한다.

**第十八條 (法人이 아닌 團體)** 法人이 아닌 團體로서 代表者나 管理人이 定하여져 있는 때에는는 그 名義로써 審判의 請求人 또는 被請求人이나 異議申請人이 될 수 있다.

**第十九條 (行爲能力)** ① 未成年者, 禁治產者, 限定治產者는 그 法定代理人의 同意없이 特許에 關한 節次를 行爲할 수 없다. 但 未成年者가 獨立하여 法律行爲를 할 수 있는 境遇는 例外로 한다.

② 限定治產者가 特許에 關한 節次를 行爲할 때에는는 後見人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③ 出願에 對한 節次의 能力이나 法定代理權 또는 節次를 行爲할 때에 必要한 授權의 欠缺이 있을 때에는는 期間을 指定하여 그 補正을 命한다. 補正을 命하여도 이에 應하지 아니할 때에는는 欠缺을 補正할 수 없을 때에는는 第二十八條第一項의 規定에 依하여 出願을 無效로 할 수 있다.

④ 行爲能力이나 法定代理權이 없거나 節次를 行爲할 때에 必要한 授權의 欠缺이 있는 者가 行한 節次는 그 欠缺이 없는 當事者 또는 法定代理人의 追認이 있는 때에

# 官報

제 3038호 (其七)  
단기 4294년 12월 31일

공보부 발행

## 법률

國家再建最高會議의 議決로 確定된 特許法을 이에 公布한다

大統領 尹 潯 善 團

檀紀 四十二年十二月三十一日

內閣首班 宋 堯 讚

商工部長官 丁 來 赫

### ◎法律第九五〇號

#### 特許法

##### 第一章 總則

第一條 (目的) 本法는 發明을 獎勵, 保護育成함으로 技術의 進歩發展을 圖謀하고 國家産業의 發達에 寄與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二條 (特許의 對象) 産業에 利用할 수 있는 新規의 發明을 發明者는 그 發明에 對하여 特許를 받을 수 있다

第三條 (植物發明特許) 無性的으로 反復生殖할 수 있는 變種植物을 發明한 者는 그 發明에 對하여 特許를 받을 수 있다

다 但 塊莖, 塊根, 球根을 除外한다

第四條 (不特許事由) ① 다음에 揭記하는 發明에 對하여는 特許하지 아니한다

一, 飲食物 또는嗜好物

二, 醫藥 또는 二調合法

三, 化學方法에 依하여 製造할 수 있는 物質

四, 秩序 또는 風俗을 紊亂하게 하거나 衛生에 害가 있을 念慮가 있는 것

◎前項 第一號乃至第三號의 物質을 製造할 수 있는 方法에 關한 發明은 例外로 한다

第五條 (新規性의 定義) 本法에서 新規의 發明이라 함은 다음各號의 一에 該當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一, 特許出願前에 國內에서 公知되었거나 또는 公然히 使用된 것

二, 特許出願前에 國內에서 頒布된 刑行物에 容易하게 實施할 수 있는 程度로 記載된 것

第六條 (新規性의 擬制) ① 特許를 받을 수 있는 者가 自己의 發明을 試驗하기 爲하여 前條各號의 一에 該當하게 한 境遇에는 그날로부터 六月以內에, 特許를 出願한 때에는 그 發明을 新規의 것으로 본다

② 特許를 받을 수 있는 者의 意思에 反하여 그 發明이 前條各號의 一에 該當하게 된 境遇에는 그날로부터 六月以內에 特許를 出願한 때에는 前項과 같다

第七條 (新規性의 擬制) 特許를 받을 수 있는 者가 政府나 서울特別市, 道, 市, 郡 또는 이에 準하는 機關에서 開設하는 博覽會나 政府의 認可를 받아 開設하는 博覽會 또는 閣令으로 定하는 外國의 博覽會에 出品하기 爲하여 自己의 發明을 第五條各號의 一에 該當하게 한 境遇에는 그 開會日로부터 六月以內에 特許를 出願하였을 때 그 發明을 新規한 것으로 본다

第八條 (單一出願單一發明) ① 特許出願은 一發明에 對하여 一출願으로 한다 但 二以上の 發明이 相互牽聯하여 利用上一發明이 된다 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② 前項 但款의 規定에 依한 出願者는 特許出願書의 添附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第九條 (出願分制) 二以上の 發明은 一출願으로 할 者가 이 二以上の 出願으로 分割出願한 境遇에는 그 分割出願은 最初에 出願한 때에 出願한 것으로 본다

第十條 (先出願者에 對한 特許) 同一한 發明에 對하여는 最先出願者에 限하여 特許한다 但 同日에 二以上の 出願이 競合하였을 때에는 各出願者의 協議에 依하여 그 中 一人만을 特許하며 協議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모두 特許하지 아니한다

第十一條 (無權利者의 出願과 正當權利者의 保護)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의 承繼인이 아닌 者 또는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를 冒認한 者가 한 出願으로 因하여 特許를 받지 못하게 된 境遇에는 그 特許出願後에 한 正當權利者의 出願은 그 特許를 받지 못하게 된 特許出願한 때에 이 出願한 것으로 본다 但 特許를 받지 못하게 된 날로부터 三十日을 經過하거나 出願公告가 있을 날로부터 三十日을 經過한 후에 出願한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第十二條 (無權利者의 特許와 正當權利者의 保護)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의 承繼인이 아닌 者 또는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를 冒認한 者가 特許를 받았기에 因하여 그 特許를 無효로 하는 審決이 確定한 境遇에는 그 特許의 出願後에 한 正當權利者의 出願은 無効된 特許의 出願

第十條 (先出願者에 對한 特許) 同一한 發明에 對하여는 最先出願者에 限하여 特許한다 但 同日에 二以上の 出願이 競合하였을 때에는 各出願者의 協議에 依하여 그 中 一人만을 特許하며 協議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모두 特許하지 아니한다

第十一條 (無權利者의 出願과 正當權利者의 保護)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의 承繼인이 아닌 者 또는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를 冒認한 者가 한 出願으로 因하여 特許를 받지 못하게 된 境遇에는 그 特許出願後에 한 正當權利者의 出願은 그 特許를 받지 못하게 된 特許出願한 때에 이 出願한 것으로 본다 但 特許를 받지 못하게 된 날로부터 三十日을 經過하거나 出願公告가 있을 날로부터 三十日을 經過한 후에 出願한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第十二條 (無權利者의 特許와 正當權利者의 保護)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의 承繼인이 아닌 者 또는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를 冒認한 者가 特許를 받았기에 因하여 그 特許를 無효로 하는 審決이 確定한 境遇에는 그 特許의 出願後에 한 正當權利者의 出願은 無効된 特許의 出願

第十條 (先出願者에 對한 特許) 同一한 發明에 對하여는 最先出願者에 限하여 特許한다 但 同日에 二以上の 出願이 競合하였을 때에는 各出願者의 協議에 依하여 그 中 一人만을 特許하며 協議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모두 特許하지 아니한다

第十一條 (無權利者의 出願과 正當權利者의 保護)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의 承繼인이 아닌 者 또는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를 冒認한 者가 한 出願으로 因하여 特許를 받지 못하게 된 境遇에는 그 特許出願後에 한 正當權利者의 出願은 그 特許를 받지 못하게 된 特許出願한 때에 이 出願한 것으로 본다 但 特許를 받지 못하게 된 날로부터 三十日을 經過하거나 出願公告가 있을 날로부터 三十日을 經過한 후에 出願한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第十二條 (無權利者의 特許와 正當權利者의 保護)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의 承繼인이 아닌 者 또는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를 冒認한 者가 特許를 받았기에 因하여 그 特許를 無효로 하는 審決이 確定한 境遇에는 그 特許의 出願後에 한 正當權利者의 出願은 無効된 特許의 出願

第十條 (先出願者에 對한 特許) 同一한 發明에 對하여는 最先出願者에 限하여 特許한다 但 同日에 二以上の 出願이 競合하였을 때에는 各出願者의 協議에 依하여 그 中 一人만을 特許하며 協議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모두 特許하지 아니한다

第十一條 (無權利者의 出願과 正當權利者의 保護)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의 承繼인이 아닌 者 또는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를 冒認한 者가 한 出願으로 因하여 特許를 받지 못하게 된 境遇에는 그 特許出願後에 한 正當權利者의 出願은 그 特許를 받지 못하게 된 特許出願한 때에 이 出願한 것으로 본다 但 特許를 받지 못하게 된 날로부터 三十日을 經過하거나 出願公告가 있을 날로부터 三十日을 經過한 후에 出願한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第十二條 (無權利者의 特許와 正當權利者의 保護)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의 承繼인이 아닌 者 또는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를 冒認한 者가 特許를 받았기에 因하여 그 特許를 無효로 하는 審決이 確定한 境遇에는 그 特許의 出願後에 한 正當權利者의 出願은 無効된 特許의 出願